

【사건번호 2022-004】 금융위원회 기업벌점 데이터 사건

1. 개요

- 피신청인: 금융위원회
- 대상 공공데이터: 기업벌점 데이터(Open API)

INPUT	OUTPUT	비고
기준일	상태코드, 에러발생이유, 기준일, 시장구분, 기업명, 종목코드, 누적벌점, 관리종목지정전누적벌점, 관리종목 지정후누적벌점	INPUT 정보 미입력시 - 기준일은 조회일 - 시장구분은 전체정보 제공
시장구분*		

* 전체, 코스피(유가증권시장), 코스닥, 코넥스 등 증권시장별 구분

2. 사건개요

- 신청인은 앱개발을 목적으로 한국거래소의 기업벌점* 데이터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신청하였으나,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는 민간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므로 제공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

* 자본시장법에 따른 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 신고·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,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해당 법인에 벌점을 부과하여 공시

3. 사실조사

가. 데이터 보유·관리 현황

- 대상 데이터는 「자본시장법」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상장공시시스템에서 게시글 형태로 공개*하고 있으며,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

* 공개URL : <https://kind.krx.co.kr/investwarn/penalty.do?method=searchPenaltyImprovementList>

나.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

- “공공데이터”는 “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”(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)를 의미하고,

- “공공기관”이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*(공공데이터법 제2조제1호, 21쪽)으로 규정함

* 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

공단, 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, 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, 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기관 및 단체

-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거래소에서 수집·관리하여 공개하고 있는 정보로,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
- 한국거래소는 「자본시장법」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·운영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은 기관으로,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이 아니므로,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

다.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

-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,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,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(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, 22쪽)
- 이 사건 데이터는 자본시장법 제391조와 제392조,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제36조 등에 따른 주권등상장법인의 기업별점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시스템에서 게시글 형태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정보로 비공개성은 문제되지 않으나,
- 피신청인이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 여부에 따른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관점에서 볼 때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, 공공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, 피신청인에 대해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의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임
- 다만, 피신청인이 금융표준종합정보DB 데이터 개방체계를 구축하여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 및 특수법인과 협약을 통해 해당 시스템간 상호 연계 및 일부 데이터를 수집·표준화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서 Open API로 제공*하는 개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이 사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함께 제공하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

* 일반상품시세, KRX상장종목, 증권상품시세, 지수시세, 주식시세, 채권시세, 파생상품시세 등 7개 목록

4. 조정내용

가. 조정결정 사항

-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.

나. 조정결정 이유

-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이하 '공공데이터법'이라 함)」에 따르면,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(제17조제1항).
 - “공공기관”이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(제2조제1호), “공공데이터”란 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(제2조제2호).
 - 이 사건 관련 법령, 피신청인 제출 자료 및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,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거래소가 「자본시장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·생성하여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이며 피신청인이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,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.
- 그러함에도 불구하고, 피신청인은 협약을 통해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의 정보시스템 중 일부를 상호연계하여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과정을 거쳐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하는 개방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해당 체계를 활용하여 이 사건 데이터를 용이하게 추가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.
 - 검토결과, 이 사건 데이터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상장공시시스템에서 게시글 이외 파일형태로도 제공하고 있어 신청인이 시장구분별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, 대상 건수가 많지 않으며 공시주기도 빈번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Open API 방식의 제공을 위한 해당 정보시스템 연계, 수집, 표준화 및 개발은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.

5. 조정결과

-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, 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